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28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3
2. 목재문화진흥회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가 ...	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5. 8. 7.

다. 회 부 일 : 2025.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

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개정안은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u>

현재 목재와 관련된 법정기념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에 민간 차원에서 ‘목재의 날’을 12월 첫째 주 목요일로 선포하였으나¹⁾ 기념식이 매년 다른 날짜에 개최되고 기념일로서의 공식성과 상징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인식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²⁾

1) “12월 첫 주 목요일은 ‘목재의 날’”(나무신문, 2018년 12월 24일)

2) ‘목재의 날’ 기념식 개최 일자: (‘22년) 9.29., (‘23년) 8.25., (‘24년) 8.29., (‘25년) 8.28.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에 ‘목재의 날’을 12월 첫 주 목요일로 선포하였으나 아직까지 목재산업박람회 개막일에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는 설명임(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개정안은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목재자급률 제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5월 23일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12.5.23)로 목재 이용 촉진이라는 국가 주요 시책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이므로 기념일 지정 기준에 적합하고, 기존 민간 주도 방식을 개선하여 산림청이 목재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목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현행 각종 기념일의 지정 방식으로는 기념일의 중요성 및 입법 목적 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에서 지정하거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지정하고 있음.³⁾

3) 2025년 7월 기준, 57개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147개 기념일은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있음.

2. 목재문화진흥회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가

개정안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목적과 사업에 목재산업의 진흥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6조(목재문화산업진흥회) ①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하고,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⁴⁾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

현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조림 이후 목재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산림은 증가했으나, 2023년 기준 목재자급률은 18.6%에 불과하여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국산목재 자급률 현황('20년~'23년)】

목재자급률 산정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량(목재수급통계)	15.9%	15.8%	15.0%	(17.4%)
이용량(목재이용실태조사)	(15.7%)	(16.6%)	(16.4%)	18.6%

주1. '22년도까지 생산량(목재수급통계) 기준으로 목재자급률을 산정·공표하였으나, '23년도부터 산정기준을 이용량(목재이용실태조사)으로 변경

자료 : 산림청

최근 관세 영향,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열대림 보호를 위한 국제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자원안보 측면에서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반면,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

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 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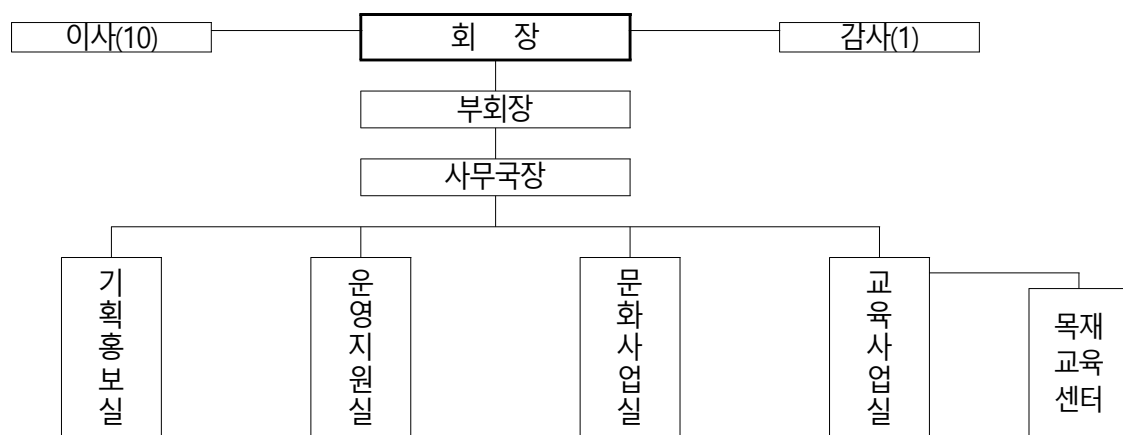
이에 개정안은 목재문화진흥회가 목재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문화·교육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현원 16명 규모의 소규모 법인으로, 개정안에 따라 진흥회가 산업 진흥 기능 까지 총괄하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직 규모 및 전문 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 확대와 더불어 인력, 예산 등 조직 개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목재문화진흥회 조직 현황】



5)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임산물 생산지원의 일부로 목재 응용 사업화 등 목재 산업을 부수적으로 지원 중이나 현장 대응 및 정책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구 분	합계	정 규 직							계약직
		소 계	사무국장	지부장	센터장	실장	팀장	주임	
현 원	16	16	1	-	1	3	1	5	5

주1. 예산('25년도): 71억원(산림청 위탁, 녹색자금 등)

자료 : 산림청

둘째, 법적·제도적 보완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개정할 경우 현행법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흥회가 목재의 문화·교육적 역할과 산업 기능을 함께 전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목재산업 진흥과 지원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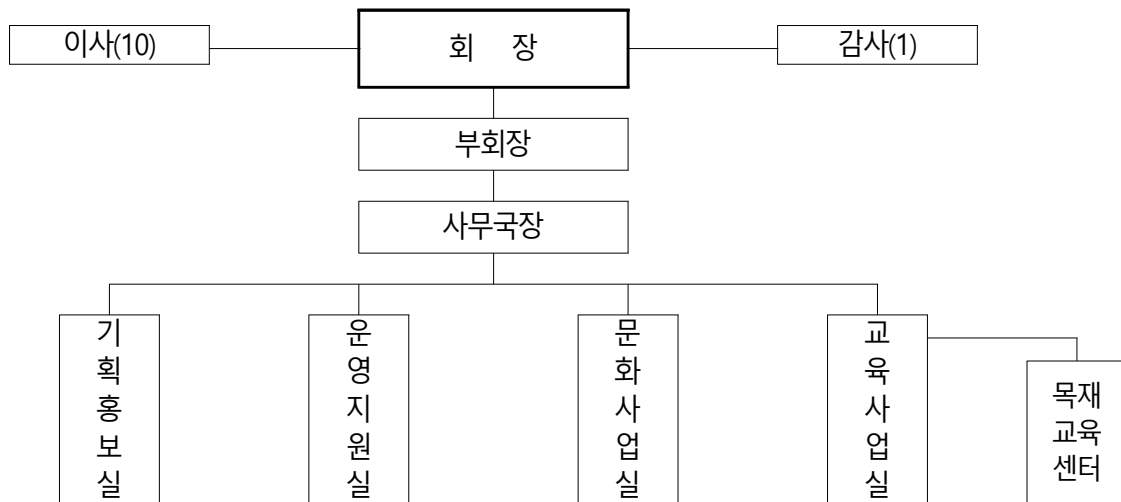
목재문화진흥회 현황

[자료: 산림청]

□ 기관 개요

기관 개요	설립일	2014.03.25	설립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진흥, 목재교육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주요기능	국민의 목재 호감도 향상, 생활 속 목재 체험 인프라 구축,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 운영, 탄소저장량 측정, 목재문화인지도 지표의 향상, 목재 생활권의 조성 등		
	조직	1국, 4실	예산('25년도)	71억원 (산림청 위탁, 녹색자금 등)
	인원	현원 16명	임원현황	기관장1, 감사1, 상임이사1, 비상임이사9
	위치	서울시 금천구		
	회원사	해당 없음		
기관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 정기총회 → 산림청 승인		
	보수	명예직(무보수)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기관 목표	○ 목재문화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목재이용 활성화 ○ 목재문화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조직 현황



구 분	합계	정 규 직							계약직
		소 계	사무국장	지부장	센터장	실장	팀장	주임	
현 원	16	16	1	-	1	3	1	5	5

□ 목재문화진흥회 주요 사업

1. 목재문화지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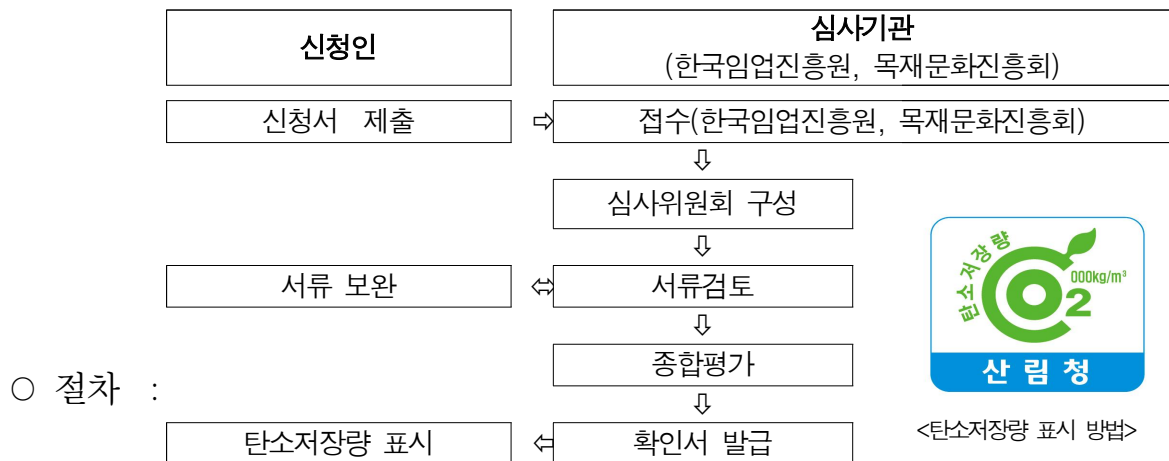
- 목적 : 목재문화 정착·진흥을 위한 정책 성과의 정략적 지표를 제공하고,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근거 : 목재이용법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 내용 :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2025년도 목재문화지수 측정 및 공표
※ 2024년 전국평균 62.9점(목재이용기반 68.5점, 이용활성화 65.2점, 인지도 46.2점)

2. 목재교육제도 운영

- 목적 : 생산·수확·가공 과정 등의 교육으로 국산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중립 기여, 필요성 등을 교육하고 목재교육전문가 관리
- 근거 : 목재이용법 제10조의 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 내용 : 전국 9개 양성기관 및 자격취득 응시자 대상으로 목재교육전문가 평가시험 운영(3회) 및 보완관리
※ 2024년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발급(40명), 문제강신(1,306문항) 및 신규문제 출제 완료(150문항)

3.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적 :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국제기준에 맞게 표시하여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정량적 자료를 제공하고 친환경성 홍보
- 근거 : 목재이용법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 내용 : 국산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업체 등 (목재제품 11개 품목) 탄소저장량 측정을 위한 홍보 및 이력관리 등 수행
※ 2024년 인증서 발급실적 : 113개 제품 (단일 69건, 파생 44건)



4.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지원사업

- 목적 : 국산목재를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실내환경개선사업으로 국산 목재 우수성 홍보 및 목재산업 활성화 도모
- 근거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1조
- 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및 장애인특수학교 대상으로 목재활용 환경개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24년)을 통하여 34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5.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 목적 :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을 통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근거 :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0조의 2
- 내용 : 목재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정선·함양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정읍·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등 신규 체험장에 대한 운영 협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24년)을 통하여 34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6.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 목적 : 국산목재 이용확대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적 인프라 확보
- 근거 : 목재이용법 제16조2항
- 내용 :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목공체험지도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등
※ 2024년 실적 1,263명 양성 (1급 : 100명, 2급 : 364명, 3급 : 799명)

7. 숲체험교육사업

- 목적 : 국산목재를 통한 목재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목재이용 인식 개선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
- 근거 : 산림자원법 제58조
- 내용 :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청소년 교육 추진
※ 2024년 실적 116회 2,857명(연인원) 교육 추진

8. 목재체험교실 운영

- 목적 :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국산목재 이용 가치 교육
- 근거 : 목재이용법 제16조
- 내용 : 국산목재 활용 탄소중립 교재 개발, 학교 연계 목재체험교실 운영
※ 2024년 운영학교 34개 선정 12,000명(연인원) 교육 추진